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19 발의연월일: 2023. 7. 27.

발 의 자:서동용・민형배・정성호

이병훈 · 김영호 · 송옥주

김정호 · 김철민 · 송재호

최인호 · 김홍걸 · 윤재갑

김용민 · 문정복 · 유기홍

김태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와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

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원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교육활동내에서 발생하 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 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 부모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않게 하도록 교육감 등이 각종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생안전사고, 아동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심의·조정·권고 하동록 하여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7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42장(손괴의 죄)에"를 "제42장(손괴의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에"로 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부모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대하면서 학부모 등의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5(학교 내 괴롭힘의 금지)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학교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학교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6(학교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 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학교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 는 교원(이하 "피해교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교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피해교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학교 내 괴롭

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원 및 피해교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2항에 따라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교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2.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분쟁사 안을 심의·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분 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교원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 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구제조치 등의 권고, 징계권고, 고발
 -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관련 직원의 회의 참석, 변호사의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 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 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1.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 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 3.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8.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

천을 받은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 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 는 경우
 -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9조의5(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상대방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의6(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9조의7(조정 전 화해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9조의8(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분쟁원인행위의 중지
 -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 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9(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또는 학생인권 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감에게 법령·제도 ·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계류된 사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
| 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 | 한 조치) ① |
| 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 |
|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 |
| 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 |
|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 | |
| 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 |
|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 | |
| 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 |
|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 |
|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 |
|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 | |
| 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 |
|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 | |
| 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 | |
| 다. | <u>.</u> |
|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 | 1 |
| 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 |
|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 |
|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 | <u>제42장(손괴의 죄), 제</u> |
| 당하는 범죄 행위 | <u>136조(공무집행방해)</u> , 제 <u>137조</u> |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2.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제156조(무고)에-----

- 2. ~ 4.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폭언 등으로 인한 건 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교육 감은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부모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응대하면서 학부모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 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 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교원에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요구를 이 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 니 된다.

제16조의5(학교 내 괴롭힘의 금지)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학교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학교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6(학교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 나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학교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원(이하 "피해교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교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피해교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교육감또는학교의장은제2항에따른조사결과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원 및 피해교원등에 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① 제2항에 따라 학교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교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 |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
|-------------------|--------------------|
| 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 운영) ① |
|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 |
|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 |
| 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 |
| 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 | |
| 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 |
| 둔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 2.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 |
|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 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 |
|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 | 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
| 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 | <u>정하는 사항</u> |
| 니한 분쟁의 조정 | |
|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 | |
| 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 | |
| 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 | |
|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 | |
| <u>정</u> | |
|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 | <u><삭 제></u> |
| 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 | |
| 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사항 | |
|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 | ② |
|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
|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 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 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2. (생략)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생 략)

<신 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

 는 사항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 제19조의2(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 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 여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이 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교원과 학부모 간 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교원에게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에 대한 심의 및 구제조치 등의 권고, 징계권고, 고발
-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 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 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등을 하기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관련 직원의 회의

<신 설>

참석, 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교육 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 이 된다.
-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 3.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 원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

 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

 랄

-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경험이 있는 학부모
-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
 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
 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8.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 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교육감이

<u>위촉한다.</u>

- ④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 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 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 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 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신 설>

(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 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 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 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 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

<신 설>

<신 설>

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의5(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
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상대방이 제2항에 따른 분 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자료의 요청 등) ① 분 쟁조정위원회는 제19조의5제1 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 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 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

<신 설>

<신 설>

고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 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의7(조정 전 화해권고) 분 쟁조정위원회는 제19조의5제1 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 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 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8(분쟁의 조정) ① 분쟁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 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분쟁원인행위의 중지
-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 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 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 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u>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u> <u>한 것으로 본다.</u>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9(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또는 학생인권 침해 예방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감에게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
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
견을 표명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

 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